

계약직직원 규정

제정 2014.4.28. 제10호
일부개정 2016.3.15. 제47호
일부개정 2016.9.07. 제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제7조의1에 따른 계약직 직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07>

제2조(정의) ① “채용” 이라 함은 계약직의 정원이 부여된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모집, 평가, 선발하여 해당직무에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채용계약” 이라 함은 계약직 직원이 재단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채용기준) ①계약직 직원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②계약직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전문계약직은 「인사관리규정」 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6.9.07>

제4조(채용결격사유) 이사장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5조(채용절차) ①이사장은 정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계약직은 일반직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 필요에 따라 일반직을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이사장이 계약직 직원의 정원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근거법령, 사업의 필요성,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 채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직이 아닌 직종의 정원 승인 요청에 대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계약직으로 변경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계약직 직원의 보수) ①계약직 직원의 등급별 기본연봉 기준표는 [별표 3]과 같다.
②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에 따라 책정하고, 매월 보수를 12분의 1로 지급한다.

③이사장은 전문계약직 직원의 초임 기본연봉을 결정할 때에 [별표 3] 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연봉액을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계약직 직원에게는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⑤계약직 직원의 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제7조(채용기간)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8조(채용기간의 연장) ①이사장은 일반계약직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필요 기간까지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전문계약직이 담당하는 사업이나 업무가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된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아니하여 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초 채용기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채용계약의 해지) 이사장은 계약직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타 채용계약 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된 때

제10조(근무실적평가) ①이사장은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11조(다른 규정의 준용)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4.4.28.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승계에 따른 특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고

용승계되는 계약직 직원의 경력, 임금, 인사, 근로계약 등의 사항은 고용승계 전 공단의 것을 승계하며 이를 이유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6.3.15. 제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07. 제58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약직 직원의 범위

직 군	직 렬	담당직무	인원 수
일반계약직	「직제 및 정원규정」 제7조의1에 따른 일반직 직렬 준용	2년 미만의 한시적 일반직 직무	2
전문계약직	사회복지분야	노인종합의료시설 운영	1

[별표 2]

계약직 직원 채용 경력 및 자격 기준

직군	직급	경력 및 자격 기준	비고
일반계약직	나	1.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3. 사회복지사 1급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4. 공무원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다	1.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이상 경력자 3. 사회복지사 1급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4. 공무원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마	1.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 2. 해당분야 전문대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 4. 공무원 9급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전문계약직	라	1. 의사면허 자격증 소지자	

[별표 3]

계약직직원의 등급별 기본연봉 기준 및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직급	기본연봉 기준	연봉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나	일반직 3급 기본연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6급(상당) 상한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6급(상당) 하한액
다	일반직 4급 기본연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7급(상당) 상한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라	일반직 6급 기본연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상한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
마	일반직 7급 기본연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비 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4]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수당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고
1. 상여수당	①정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②정근수당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이상 : 월 100,000원 . 15년이상20년미만 : 월 80,000원 . 10년이상15년미만 : 월 60,000원 . 5년이상10년미만 : 월 50,000원 <추가가산금> . 근무년수 25년이상 : 월 30,000원 . 근무년수 20년이상25년미만 : 월 10,000원 	-
2. 가계보전수당	①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 . 배우자 40,000원, 기타부양 가족 1인당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80,000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30,000원씩)을 지급한다.
	②자녀학비 보조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고등학생의 학비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및 수당규정」 [별표7]의 지급 구분에 의함
3. 특수근무수당	① 의료 업무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약무간호업무담당자 및 의료기사 종사자 -의무, 약무 직렬 : 월70,000원 -간호직렬 및 의료기사 : 월50,000원 	
	특 수 업 무 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전기,기계,전산,조경,토목,건축,운전,조리의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 나급 : 월 50,000원이하 . 계약직 다급 : 월 30,000원이하 . 계약직 라급 이하 : 월 20,000원이하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자 및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는 가산금 지급 - 기술사·건축사 : 월 100,000원이하 - 기능장, 기사 : 월 30,000원이하 - 산업기사 : 월 20,000원이하 - 운전업무종사자 중 일반5급 : 월10,000원 - 운전업무종사자 중 일반6급 이하 : 월20,000원
	③특수 직무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 하는자 : 월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30,000원 가산금 지급

구분	수당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고
4. 초과 근무수당	①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시급 × 1.5 × 시간		-
	② 휴일근무수당	· 통상시급 × 1.5 × 시간		-
	③ 야간근무수당	· 통상시급 × 0.5 × 시간		-
5. 성과 상여금	성과금	· 매년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
6. 실비 보상	① 직급보조비	· 전임계약직 - 다급 월 155,000원 - 라급 월 140,000원 - 마급 월 105,000원		-
		복리후생비	② 정액급식비	· 월 130,000원
	③ 명절휴가비		설날	· 지급기준일현재의 월 봉급액 × 60%
추석		· 지급기준일현재의 월 봉급액 × 60%		
7. 기타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일수		-

다만, 기술정보수당 받는 자 중 가)항목의 운전분야 및 나), 다)항목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 병급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계약직 직원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김해시복지재단을 “사업주” 라 하고 계약직 직원을 “근로자” 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재)김해시복지재단
(근로자) _____

제2조(담당업무)

제3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5조(신분)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제6조(연봉계약액) 금 천원

제7조(월보수 지급액 및 보수지급 방법)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약직 직원 규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 (복무) “근로자”는 말은 바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사발령장에 제시된 부서 및 내부 업무분장에 따른 위치에서 근무하며, 관계법령 및 단규를 준수한다.

제10조 (권리의 귀속)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제11조 (기타 채용조건)

가. “근로자”는 「계약직 직원 규정」 등 단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는 관계법령, 단규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주] (재)김해시복지재단

주 소 :

대표자 :

[근로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